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6. 10 선고 2022가단10006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

피고B

소송대리인 C

변론 종결2022. 4. 29.

판결 선고2022. 6. 10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21. 4. 2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,255,78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,255,78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C는 1993. 9. 7.경 주식회사 D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.

주식회사 E(위 D의 변경 후 상호)은 2013. 9. 10.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카드사용대금 및 연체이자 채권을 양도하였고, 2013. 9. 24.경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.

나.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소22810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2014. 5. 28. 'C는 원고에게 6,599,041원 및 그 중 5,970,000원에 대하여 2013. 10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이 선고되었고,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.

다. F은 2021. 3. 9. 사망하였는데,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및 자녀인 G, H, C, I가 있었다. 피고와 C, 나머지 상속인들은 2021. 4. 21. 피상속인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 한다)를 한 후 같은 날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. 4. 12. 채권최고액 216,000,000원, 근저당권자 J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,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74,736,125원이었는데, 2021. 5. 20.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.

마. C는 2021. 4. 21.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이 그 유일한 재산이었고,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2, 3,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J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,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인 2021. 4. 21. C에 대한

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, 이 사건 변론종결 시에도 존재하고 있으므로,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고,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2021. 12. 8. 기준으로 한 채권원리금은 20,255,782원(= 원금 5,970,000원 + 이자 14,285,782원)이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).

2)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피고 등 F의 공동상속인들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는 당시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

3) 피고는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를 알지 못하여 사해의사가 없었고, 악의의 수익자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,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). 피고가 주장하는

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1)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,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,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,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,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(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).

2)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, 이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상환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그런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아파트 중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면적에 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2021. 2.

70.0,000,000원(14층), 730,000,000원(9층), 2021. 4. 71.0,000,000원(15층), 2021. 5.

77.7,000,000원(7층)으로서, 2021년도 실거래가의 평균가격이 729,250,000원[=

(700,000,000원 + 730,000,000원 + 710,000,000원 + 777,000,000원) ÷ 4]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위 평균가격인

729,250,000원이라고 추인되므로,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말소된

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554,513,875원(= 729,250,000원 - 174,736,125원) 중

C의 상속지분 상당액인 100,820,704원(= 554,513,875원 × 2/11, 원 미만 버림)이 C의

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해당되는 책임재산이 된다.

한편 2021. 12. 8. 기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20,255,78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 공동담보가액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위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인 20,255,782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0,255,78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0,255,78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홍주현

별지